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
----------	---

제안일자 : 2003.3.4.

제안자 : 사천시장

1. 개정이유

- 가. 행정자치부의 지방상수도 요금인상 및 요금체계 개선 추진지침에 따라 하수도사용요금 인상과 누진구간을 조정하고 업종을 통·폐합하며,
- 나. 관련 법률의 제명이 변경되어 이를 개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 가. 하수도사용요금요율표의 구간을 개편하고 요율을 전체평균 30% 인상조정(안 제10조제2항 별표 1)
- 나. 하수도사용료업종별구분표상 업무용, 영업용, 옥탕2종을 일반용으로 통합하고, 옥탕1종을 대중탕용으로 명칭 변경과 일부 업종구분 내용도 변경(안 제10조제2항 별표 1-1)
- 다. 건설업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법률의 제명이 변경되어 이를 개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내용과 산정방식을 개정(안 제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5조제2항 별표 4)

3. 법적근거

하수도법 제21조(사용료 등), 같은법 제32조(원인자부담금 등)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 고 사 항

-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붙임
- 나. 요금인상에 따른 세입증대 효과
 - 현 행 : 909백만원
 - 인상후(30%) : 1,181백만원
 - 예 상 수 익 : 272백만원
-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 (2) 물가실무대책위원회 심의
 - 가) 심의일자 : 2002. 12. 13.
 - 나) 심의결과 : 원안대로 가결
- (3)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 가) 심의일자 : 2002. 12. 24.
 - 나) 심의결과 : 원안대로 가결
- (4) 입법예고
 - 가) 입법예고기간 : 2003. 1. 24 ~ 2. 12.(20일간)
 - 나) 예고방법 : 신문게시공고(경남일보, 경남신문) 및 인터넷,
시·읍·면·동 게시관 게시공고
 - 다) 의견제출내용 및 반영 : 미반영
 - 미반영사유 : 의견제출사항 없었음
- (5) 규제심사 : 해당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용으로 산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1-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1-1은 2003. 6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개정전)

[별표 1]<개정 2002.1.10>

하수도사용요금요일표

업종	구간(톤)	요금(원)	비고
가정용	1~10	100	
	11~20	110	
	21~30	120	
	31~40	130	
	41~50	150	
	51이상	170	
업무용	1~20	100	
	21~50	115	
	51~100	130	
	101~300	145	
	301이상	170	
영업용	1~30	110	
	31~50	130	
	51~100	170	
	101~500	210	
	501이상	230	
욕탕1종	1~500	100	
	501~700	120	
	701~1000	140	
	1001이상	160	
욕탕2종	1~200	180	
	201~300	220	
	301~500	260	
	501이상	310	
산업용	톤당	100	

- 주) 1.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높은 요금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2. 사용요금의 산출은 총사용량을 단계별로 누진 적용한 산출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후)

[별표 1]

하수도사용요금요율표

업종	구간(m³)	요금(원)	비고
가정용	1~20	135	
	21~30	155	
	31이상	200	
일반용	1~50	145	
	51~100	200	
	101~300	230	
	301~500	275	
	501이상	315	
대중탕용	1~500	130	
	501~1000	170	
	1001~1500	210	
	1501이상	260	
산업용	m³당	130	

주) 1.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높은 요금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2. 사용요금의 산출은 총사용량을 단계별로 누진 적용한 산출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전)

[별표 1-1]

하수도사용업종별구분표

업종	구 분 내 용
가 정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 철물의 소매점 등으로서 10㎡미만의 업소 ○신문보급소, 신체장애자가 경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 ○공용급수전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 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업 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설소화전 ○시립위탁시설(청소년회관, 체육시설에 한함) ○사회구호단체, 원호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시설중 비영리법인으로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인·허가를 받아 설치·운영하는 시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사업 포함) ○학교 ○정당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 한국은행, 정부투자기관, 전용전에 의한 철도용, 지 방공사 및 지방공단, 비영리 수영장, 교회, 사찰, 국·공립대학부속병원(국가, 지방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병원 포함) ○병영 ○신문사, 방송국 ○한국과학기술단지의 연구기관 ○급수탑에 의한 급수(단,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하는 경우에 한함), 공설소화전 ○시장이 지정한 무료 공중이용화장실에 대한 급수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
영 업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접객업, 공연장, 숙박업 ○의료법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시설규모(연면적 830㎡육실, 발한실의 바닥면적 합계90㎡)이하의 안마시술소 ○유기장, 오락장, 노래방 ○백화점, 도매센타, 대규모소매점, 대형점, 시장(상가포함) ○차량판매, 정비업(검사장 포함),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석유판매소 제외) 운송 또는 관광업(창고보관업 포함) ○예식장 ○학원(도서실 포함, 피아노 개인지도 제외) ○사진 현상소

업종		구분내용
영 업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시설업 (탁구장업, 체육도장업, 바닥면적 100㎡이상의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업 제외) ○금융기관(보험, 증권회사, 신용금고 등 포함, 전당포 제외) ○발전소 ○이발소(미장원 포함) ○인쇄소, 출판사(인쇄기계 시설이 없는 업소 제외) ○화훼, 식목업 ○빌딩(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전용이 아닌 지하층을 포함한 4층이상 건물), 오피스텔 ○도살장, 정육점 ○양조업, 제빵업, 제분업(방앗간 포함), 제당업, 청량음료제조업, 의약품, 화공약품, 화장품제조업, 전기 및 전자제품제조업, 합성수지제조업, 페인트류제조업, 가구류제조업(자재가공 포함), 연료제조(고압가스제조 포함) ○염색업 및 섬유제조가공업, 식료품제조가공업, 피혁제조가공업, 기타 월평균 200㎡이상 사용하는 제조가공업소 ○도금업(도금이 주업인 경우에 한함) ○제재소, 목재소(목공소 제외) ○요업(시멘트가공제품, 초자제품 포함)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가설한 급수시설에 대한 급수(단, 운반급수의 경우에는 최종단계 효율 적용,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 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제외) ○건축공사장에 대한 급수(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멸실 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단, 최종단계 효율 적용)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
	1종	○ 공동탕에 대한 급수(허가업소의 업태 구분은 허가 기준)
욕 탕 용	2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목욕장업(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 기준) ○바닥면적 100㎡이상의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에 대한 급수 ○가족탕업, 한증막업(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 기준) ○상기 “영업용” 이외의 안마시술소
	산업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두채 재배업소

- 주) 1.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하도수, 지하수 및 기타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2.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 한다.

(개정 후)

[별표 1-1]

하수도사용업종별구분표

업종	구분내용
가정용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철물 등의 소매업·부동산중개업·인장업·행정서사업·수예점·만화가게·구멍가게 등으로서 10㎡미만의 소규모 가게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단체
일반용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하수
대중탕용	○일반대중 목욕장업
산업용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한 공장등록된 사업장

주) 1.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하도수, 지하수 및 기타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2.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 한다.

(개정전)

[별표 4]<개정 2002.3.23>

원인자 부담금 산정방식

□ 원인자부담금 =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 하수관거 원인자 부담금

1.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 \text{m}^3\text{당 원인자부담금(원/m}^3\text{)} \times \text{하수발생량(m}^3\text{/일)}$$

※ m³당 원인자부담금

$$= \text{하수종말처리시설 총사업비} \times 1 / \text{하수종말처리시설용량(m}^3\text{/일)} \times a$$

※ 총사업비는 조례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비용으로 지방양여금, 지방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 m³당 원인자부담금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의 계산법에 의거 시장이 매년공고 (공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 등)

2. 하수관거 원인자 부담금

$$= \text{하수관거 총사업비} \times \text{개발지역내 하수발생량(m}^3\text{/일)} / \text{하수관거 계획하수량(m}^3\text{/일)} \times a$$

※ 총사업비는 조례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비용으로 지방양여금, 지방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a : (1 + \text{공공하수도 설치완공이후 년평균 생산자물가상승율} / 100) ^n$$

n : 공공하수도 설치완료 이후 경과 년수

(개정후)

[별표 4]

원인자 부담금 산정방식

□ 원인자부담금 = 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부담금 + 하수관거 원인자 부담금

1. 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 부담금

= m³당 원인자부담금(원/m³) × 하수발생량(m³/일)

※ m³당 원인자부담금

=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용 × 1/ 하수종말처리시설용량(m³/일) × a

※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용은 조례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 m³당 원인자부담금은 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의 계산법에 의거
시장이 매년공고(공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 등)

2. 하수관거 원인자 부담금

= 하수관거 총사업비 × 개발지역내 하수발생량(m³/일) / 하수관거
계획하수량(m³/일) × a

※ 총사업비는 조례 제15조제2항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a : (1 + 공공하수도 설치완공이후 년평균 생산자물가상승율/ 100) ⁿ

ⁿ : 공공하수도 설치완료 이후 경과 년수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p>제4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의 시공은 <u>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치공사</u>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생략</p>	<p>제4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 -- <u>건설산업기본법</u> ----- -----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5조(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32조의 <u>규정</u>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u>공공하수도(하수관거 및 펌프시설,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의 신·증설</u>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환경평가 비용지비(지장물보상비 포함), 공사비(부대공사비 포함), 시공감리비, 기타부 대비로 한다. 다만, 하수관거는 개발 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로 한다.</p>	<p>제15조(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32조의 <u>규정</u>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u>하수종말처리장</u> 건설비용으로 산정 한다.</p>
<p><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1-1은 2003. 6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p>

법령발취내역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안)

1. 하수도법

[일부개정 2002.2.4 법률 제6656호 환경부]

제21조 (사용료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改正 1982.12.31>

第32條 (原因者負擔金등)

④公共下水道管理廳은 下水終末處理施設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 처리에 관한法律 第9條第1項 또는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汚水處理施設 또는 單獨淨化槽를 設置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 施設을 設置하는데 소요되는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公共下水道의 설치에 필요한 費用으로 부담시킬 수 있다. <新設 1994.8.3, 1999.2.8, 2001.3.28>

⑤第1項 내지 第4項의 負擔金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改正 1982.12.31, 1993.12.10, 1994.8.3>

2. 하수도법시행령

[일부개정 2002.8.8 대통령령 제17698호 환경부]

제14조의2 (점용료등의 결정기준)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기타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수질 기타 사용의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3.3.25]

3.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2.12.26 법률 제6827호 환경부, 시행일 2003.6.27]

第9條 (汚水處理施設의 設置<개정 1999.2.8>) ①汚水を 排出하는 建物등을 設置하는 者は 單獨 또는 공동으로 汚水處理施設을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8>

1. 汚水を 下水道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下水終末處理施設 또는 水質環境保全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廢水終末處理施設로 流入시켜 처리하는 경우(下水終末處理施設 또는 廢水終末處理施設이 設置중에 있거나 設置豫定인 地域에서 汚水を 同施設로 流入시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同施設로의 流入·處理時點이 建物 기타 施設物の 竣工豫定時點이전인 경우에 한한다)

2. 기타 環境部令이 정하는 경우

第10條 (單獨淨化槽의 設置) ①水洗式化粧室을 設置하는 者는 單獨淨化槽를 함께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8>

1. 水洗式化粧室에서 발생하는 汚水を **第9條의 規定**에 의한 汚水處理施設로 流入시켜 처리하는 경우

2. 水洗式化粧室에서 발생하는 汚水を 雨水·汚水分流式 下水道를 통하여 **下水道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下水終末處理施設** 또는 **水質環境保全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廢水終末處理施設로 流入시켜 처리하는 경우(下水終末處理施設 또는 廢水終末處理施設이 設置중에 있거나 設置豫定인 地域에서 汚水を 同施設로 流入시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同施設로의 流入·處理時點이 建物 기타 施設物の 竣工豫定時點이전인 경우에 한한다)

4.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2002.12.14 環境부령 제134호 環境부]

제12조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면제 대상)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기타 環境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수세식화장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건물 기타 시설물(이하 "건물등"이라 한다)로서 1일 오수발생량이 1세제곱미터이하인 건물등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전문개정 1999.8.9]

5. 하수도법

[일부개정 2002.2.4 법률 제6656호 環境부]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1982.12.31, 1993.12.10, 1994.8.3, 1997.3.7, 2001.3.28>

5. "下水終末處理施設"이라 함은 下水를 最終的으로 處理하여 河川·바다 기타 公有水面에 放流하기 위한 處理施設과 이를 補完하는 施設을 말한다.

6.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02.12.26 법률 제6829호 環境부, 시행일 2003

第25條 (廢水終末處理施設의 設置)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水質汚染이 惡化되어 環境基準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水質保全上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地域안의 各 事業場에서 排出되는 汚染物質을 共同으로 처리하여 公共水域에 排出하게 하기 위하여 廢水終末處理施設(이하 "終末處理施設"이라 한다)을 設置·운영하거나,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게 終末處理施設을 設置 또는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事業者 기타 水質汚染의 原因을 직접 惹起한 者는 따로 法律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終末處理施設의 設置·운영에 필요한 費用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부

답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7.8.28, 2000.1.21>

1. 環境改善費用負擔法 第14條第2項第1號 내지 第3號의 1에 해당하는 者
 2. 環境改善費用負擔法 第14條第2項第4號에 해당하는 者로서 環境部長官이 終末處理施設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者
-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終末處理施設의 종류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7.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개정 2002.12.18 대통령령 제17809호 환경부]

제32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종류등)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2.24, 2000.7.1, 2001.6.30>

1.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제7조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에 설치된 폐수종말처리시설
2.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 설치된 폐수종말처리시설
3. 기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타 환경부장관이 하천 및 호소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폐수종말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